

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

『자동차관련 과태료』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합니다.
번호판 영치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**과태료 체납액을 사전에 납부**하여 주시고
영치에 따른 주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

영치대상

- ▶ 주·정차 위반, 자동차검사 지연, 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체납차량
- ▶ 2011.7.6. 이후 과태료 총액이 30만원 이상, 60일이상 체납시



영치근거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



문의

금정구청 교통행정과 ☎(051)519-4505~4510

과태료 납부방법

1.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⇒ 전화문의(☎519-4505~4510)후 가상계좌 생성 ⇒ 납부(계좌이체)
※ 납부 이용시간 07:00 ~ 22:00
2. 인터넷 납부(<http://etax.busan.go.kr>) [주의] ※ 예금주 반드시 확인
 - ① 공인인증서 있는 경우 : 회원등록 후 체납일괄 조회 가능
 - ②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: 주민등록번호 및 고지번호 입력 후 조회 가능
- 신용카드 납부(롯데, 신한, 현대, 삼성, BC) 및 계좌이체 가능
3. ARS 전화납부 : 1544-1414(유료)

※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돌려드립니다.

※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조 또는 타인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입건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.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

